

0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공법행위는 무효이다.
- ㄴ. 「민법」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 ㄷ.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정형성을 위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이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
- ㄹ.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집행력 등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ㅁ.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것을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O	O	O	O	O
②	O	O	O	X	X
③	O	O	X	X	X
④	X	X	O	O	X
⑤	X	X	X	O	O

해설 20 국회 9급

- ㄱ. 【O】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공법행위는 민법을 적용하여 **무효**로 본다.
- ㄴ. 【O】 비록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1. 8. 24. 99두9971).
- ㄷ. 【O】 사법의 경우와 달리 행정법관계의 명확성, 신속한 확정의 요청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ㄹ. 【O】 사인의 공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행위가 갖는 내용상 구속력·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존속력·집행력 등과 같은 **우월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 ㅁ. 【O】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93. 7. 27. 92누16942).

02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②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해석한다.
- ③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부관의 부과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후부담이 허용된다.
- ⑤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할 때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해설 ▶ 20 국회 9급

- ① 【O】 재량행위에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다만,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부관을 허용하고 있으면 기속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대판 1995. 6. 13. 94다56883).
- ② 【O】 부담과 조건의 구분에는 처분에 표현된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행정청의 객관적인 의사가 중요하다. 그 의사가 불분명하면, 최소침해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유리하도록 **부담으로 볼 것이다**(통설)(대판 2008. 11. 27. 2007두24289).
- ③ 【X】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고 **재량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부관의 부과는 허용된다.

(관련판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인데, 위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것이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중 어느 종류의 부관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관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5. 9. 28. 2004다50044).

- ④ 【O】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 새로운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이른바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2009. 11. 12. 2008다98006).
- ⑤ 【O】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도시정비법 제48조 및 그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 8. 30. 2010두24951).

▶ ③

03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의 종류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인정된다.
- ② 법원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직권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소의 종류의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소의 변경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⑤ 처분의 변경에 따르는 소의 변경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해설 20 국회 9급

① 【O】 ② 【X】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을 뿐 직권으로 소를 변경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1조(소의 변경) ①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 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③ 【O】

행정소송법 제21조(소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O】

행정소송법 제42조(소의 변경) 제21조(소의 변경)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O】

행정소송법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제1항(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04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정을 할 수 없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간접강제를 할 수는 없다.
- ③ 처분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게 된다.
- ④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⑤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등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해설 ▶ 20 국회 9급

① [X]

행정심판법 제43조의2(조정)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X]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거부부작위에 대한 이행재결(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 뿐만 아니라 간접강제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거부부작위에 대한 이행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거부에 대한 취소·무효·부존재재결, 거부부작위에 대한 이행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X]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O]

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X] 재결에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등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판례)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나아가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등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5. 11. 27. 2013다6759).

▶ ④

05

행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입주계약의 해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의 계약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 ③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의 해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 20 국회 9급

- ① 【X】 피고(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위, 입주계약해지의 절차, 그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지통보**는 단순히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피고(한국산업단지공단)가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11. 6. 30. 2010두23859).
- ② 【O】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가로 청소,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으로서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대행료 정산의무의 존부는 **민사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송물로 다루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8. 2. 13. 2014두11328).
- ③ 【X】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X】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관련판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협의취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양도인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매매**이다(대판 1999. 11. 26. 98다47245).

- ⑤ 【X】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이 갑 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업실패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점, ...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5. 8. 27. 2015두41449).

▶ ②

06

허가, 특허,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허가를 받아야만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행한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무허가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당연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 ③ 신청을 한 때와 허가를 할 때 사이에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그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른다.
- ④ 특허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청이 없거나 신청내용에 반하는 특허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⑤ 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쟁송으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해설 20 국회 9급

- ① 【O】 허가는 행위의 적법요건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허가를 요하는 행위임에도 무허가로 행위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상 강제 또는 행정벌이 가해진다.
- ② 【O】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대판 2016. 7. 14. 2015두48846).
- ③ 【O】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판 2006. 8. 25. 2004두2974).
- ④ 【O】 특허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청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허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행정의 불공정을 가져올 우려가 적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를 받은 자에게도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특허는 반드시 출원이 있어야 한다. 출원이 없거나 그 취지에 반하는 특허는 완전한 효력을 발행할 수 없다.
- ⑤ 【X】 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승인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의 소처럼 기본행위인 임의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내용 및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그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그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만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02. 5. 24. 2000두3641).
(보충설명)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충적 행위인 인가처분을 다룰 수는 없고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한다.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0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한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재량적 성질을 가진다.
- ②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형량의 부존재, 형량의 누락, 평가의 과오와 형량의 불비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게 된다.
- ③ 행정계획이 위법하더라도 사정판결이 내려지면 행정계획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
- ④ 통상 행정계획변경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 ⑤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행정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20 국회 9급

- ① 【O】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건설부장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그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계획재량처분이므로, 그 지정에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전혀 비교교량하지 아니하였거나 비교교량을 하였더라도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7. 6. 24. 96누1313).
- ② 【O】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위법하다(대판 2006. 9. 8. 2003두5426).
- ③ 【O】 행정계획이 위법한 경우에도 행정계획이 성립되면 그에 따라 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이 경우에는 행정계획의 취소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이 크기 때문에 사정판결에 의해 행정계획이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 ④ 【O】 통상 행정계획의 변경은 행정정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므로 이 경우 계획변경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격을 갖는다.
- ⑤ 【X】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지정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대판 2017. 8. 29. 2016두44186).

▶ ⑤

08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 ②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 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맹이가 방치되어 있었고 도로의 점유·관리자가 그것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도로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 ③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다른 자연적 사실과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해설 20 국회 9급

- ① 【O】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판 2002. 8. 23. 2002다9158).
- ② 【O】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 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맹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점유·관리자가 그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이는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대판 1998. 2. 10. 97다32536).
- ③ 【X】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4. 3. 12. 2002다14242).
- ④ 【O】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94. 11. 22. 94다32924).
- ⑤ 【O】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09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 등의 단체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 ⑤ 일정한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 20 국회 9급

① 【O】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망자(死者) 또는 법인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O】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③ 【O】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쉽게 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X】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아니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O】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10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
-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이익
- ③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상 이익
- ④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에 대한 납골당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익
-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시외버스 운행노선 중 일부가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중복하게 된 경우 기존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상 이익

해설 ▶ 20 국회 9급

- ① 【X】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보호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위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들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5. 9. 26. 94누1454).
- ② 【O】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 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2006.3.16. 2006두330).
- ③ 【O】 (청주시장이 삼화물산(주)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에 연탄제조를 위한 건축허가를 내주자 인근주민이 다툼 청주시 연탄공장사건에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법률들이 주거지역 내에서의 일정한 건축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추구하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주거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므로 주거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75. 5. 13. 73누96·97).
- ④ 【O】 **납골당 설치장소로부터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2011. 9. 8. 2009두6766).
- ⑤ 【O】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시외버스 운행노선 중 일부가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중복하게 되어 **기존 시내버스사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기존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2002. 10. 25. 2001두4450).

11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도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
- ③ 대집행 계고처분과 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 ④ 대집행에 대한 계고는 행정처분이고, 1차 계고 이후 대집행기한을 연기하기 위한 2차 계고, 3차 계고 또한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 ⑤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물건의 인도 또는 토지·건물의 명도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 20 국회 9급

① 【X】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

② 【X】

행정대집행법 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X】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며, 또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대판 1993. 11. 9. 93누14271).

④ 【X】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1994. 10. 28. 94누5144).

⑤ 【O】 물건의 인도 또는 토지·건물의 명도의무(점유인도)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관련판례)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에 관한 구 토지수용법 제63조, 제64조, 제77조 규정에서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행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5. 8. 19. 2004다2809).

▶ ⑤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일반적인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
- ④ 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공개가 거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개의 이익과 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해설 ▶ 20 국회 9급

- ① 【O】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 불문한다. 정보공개청구는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을 위한 경우**(예 :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등)에도 인정된다.
- ② 【O】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국민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판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국민에 대응하는 정보공개 의무자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울행정 2005. 10. 12. 2005구합10484).

- ③ 【X】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하고 **총리령과 부령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④ 【O】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정보공개가 거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해 정보의 공개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 및 사익과 비공개로 하여야 할 공익 및 사익을 이익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공개가 거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개의 이익과 형량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O】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판 2008. 11. 27. 2005두15694).

▶ ③

13

제3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를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 ②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을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④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⑤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 20 국회 9급

① **[X]**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고지는 필요적 직권고지이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는 신청에 의한 고지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를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 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② **[O]**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을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③ **[O]**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2007. 4. 12. 2004두7924).

④ **[O]**

행정소송법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①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⑤ **[O]**

행정소송법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중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①

14

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② 법규명령은 국회입법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한계 안에서 허용된다.
- ③ 위임입법에서 요구되는 구체성과 명확성은 침해행정 영역에서 강하게 요청되고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
- ④ 긴급한 경우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⑤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해설 20 국회 9급

- ① **【O】**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법규명령은 여전히 무효이다(대판 2017. 4. 20. 2015두45700).
- ② **【O】**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만 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 집행명령은 위임명령과 달리 법률이나 상위법령의 명시적 수권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할 수 있으나,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형식 등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입법사항은 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③ **【O】** 위임입법에서 요구되는 구체성과 명확성은 침해행정 영역에서 강하게 요청되고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

(관련판례) 위임입법에 있어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헌재 1997. 2. 20. 95헌바27).

- ④ **【X】**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여서는 안된다**. 긴급한 경우라도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 ⑤ **【O】**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대판 2007. 10. 12. 2006두14476).

▶ ④

15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②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완전보상을 뜻한다.
- ③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④ 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의 기회와 같은 것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관광진흥법」이 민간개발자를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해설 20 국회 9급

- ① 【O】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대판 2011. 1. 27. 2009두1051).
- ② 【O】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수용되는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완전보상**"을 뜻하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격형성에 미치는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거쳐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6).
- ③ 【O】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중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헌재 2006. 2. 23. 2004헌마19).
- ④ 【O】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의 기회와 같은 것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므로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판례)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6. 8. 29. 95헌바36)

- ⑤ 【X】 우리 「헌법」상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관련판례)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위 헌법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수용조항을 통해 민간기업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인식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 ⑤

16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그것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
- ② 주관적 책임요소로서의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다.
- ③ 직무행위가 위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압류할 수 없다.
- ⑤ 「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의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은 공무원의 인건비만이 아니라 당해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

해설 ▶ 20 국회 9급

① 【X】 공무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도, 공무원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외형상으로 공무 직무집행과 관련 있는 행위**라면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관련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는 취지는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이거나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관계없이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볼 것이요 이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고 단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66. 6. 28. 66다781).

② 【O】 국가배상책임에서 가해공무원의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다.

③ 【O】 현행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것이어야 한다. 판례에 따라 과실을 **공무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보게 되면 **직무행위가 위법하지만 공무원의 과실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관련판례)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대판 2000. 5. 12. 99다70600).

④ 【O】

국가배상법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⑤ 【O】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이란 공무원의 **인건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대외적으로 그러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경비를 부담하는 자에 포함된다(대판 1994. 12. 9. 94다38137).

▶ ①

17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거짓진술이나 사실은폐 등으로 난민인정 결정을 하는 데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한 처분
- ㄴ. 전역지원의 시기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의무장교의 인력운영 수준이 매우 저조하여 장기활용가능 자원인 군의관을 의무복무기간 중 군에서 계속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군의관을 전역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
- ㄷ.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 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 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 ㄹ. 대학교 총장이 해외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실제 취득점수의 20%의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한 불합격처분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해설 ▶ 20 국회 9급

- ㄱ. 【X】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는 **거짓 진술이나 사실은폐** 등으로 난민인정 결정을 하는 데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애초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신뢰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7. 3. 15. 2013두16333).
- ㄴ. 【X】 (전역지원의 시기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의무장교의 인력운영 수준이 매우 저조하여 장기활용가능 자원인 군의관을 의무복무기간 중 군에서 계속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군의관을 전역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에서) 장교 등 군인의 **전역허가 여부**는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바, 군의관에 대한 전역거부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8. 10. 13. 98두12253).
- ㄷ. 【O】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 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대판 1991. 7. 23. 90누8954).
- ㄹ. 【O】 자유재량에 있어서도 그 범위의 넓고 좁은 차이는 있더라도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습법 또는 일반적 조리에 의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위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학교 총장인 피고가 해외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 제4항 소정의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확일적으로 과목별 실제 취득점수에 20%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면 위법하다(대판 1990. 8. 28. 89누8255).

1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다룰 수 있다.
- ②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 ④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⑤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 등의 형식으로 위임하더라도 위임의 한계가 있으며, 고시 등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해설 20 국회 9급

- ① 【O】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6. 9. 20. 95누8003).
- ② 【O】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92. 5. 8. 91누11261).
(보충설명)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처분의 부작위이지, 입법의 부작위가 아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O】 판례는 종래부터 법령의 위임을 받아 **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은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규칙**으로 판시하고 있다.

(관련판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대판 1998. 3. 27. 97누20236).

- ④ 【X】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재적 처분기준이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에 규정된 경우는 물론이고 **시행규칙(부령)에 규정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관련판례) 행정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침해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고려하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6. 6. 22. 2003두1684).

- ⑤ 【O】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 등의 형식으로 위임하더라도 위임의 한계가 있으며, 고시 등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관련판례)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4조 제2항이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될 경우 원산지표시는 원료로 사용된 가공품의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원산지표시 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 아닌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에 관한 것이어서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으로써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대결 2006. 4. 28. 2003마715).

1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의 성립요건으로는 거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처분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소 제기 이후에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처분에 대한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을 구할 사실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 ④ 부작위위법확인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당초 신청된 특정한 처분을 뜻한다.

해설 ▶ 20 국회 9급

- ① 【X】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의 성립요건으로 대법원은 당사자에게 처분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청권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을 위법한 부작위로 보지 않는다.
- ② 【O】 부작위위법확인 소는 ...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대판 1990. 9. 25. 89누4758).
- ③ 【X】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사실상 이익이 아닌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④ 【X】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처분이 존재하는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부작위위법확인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제소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2009. 7. 23. 2008두10560).

- ⑤ 【X】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행정청의 응답의무**가 아니면 신청에 따른 **특정한 처분의무**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특정처분의무설**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인용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서의 처분의무는 **당초 신청한 특정한 처분**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를 말한다. **응답의무설**은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으로서의 재처분의무는 **행정청의 응답의무**라고 보는 견해로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 ②

20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일반적인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으면서 전자공청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의 변경은 고시와 열람의 절차를 거치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어서 처분의 이유제시가 생략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처분의 이유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 20 국회 9급

① 【O】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4. 5. 16. 2012두26180).

② 【X】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전자공청회) ①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③ 【O】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까지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판 2014. 10. 27. 2012두7745).

④ 【O】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판 2003. 2. 14. 2001두7015).

⑤ 【O】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